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3
----------	----

2018. 12. 14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04일

-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육미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
 - (현행)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→ (개정) “성별영향평가”
-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)
 -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의 정책 반영 관련 규정 등

-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확대 구성 (안 제11조)
 - 위원 수 : (현행) “15명 이내” → (개정) “20명 이내”
 - 당연직 위원 : (현행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”
 - (개정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을 포함한 경제·복지 등의 업무 담당 실·국장 중 5명 이내”
- 성별영향평가의 정책반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자 포상 조항 신설 (안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필요한 조항을 신설, 개정하고자 육미선 의원 등 7명이 11월21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기존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으로 개정(2018. 3.27.) 되면서, 용어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가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변경됨.
 - 이에 따라 조례 제명, 조 제목 및 조항들에 사용된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변경하였음.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5조는, 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음.

□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

제2조(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
2.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(週期)로 수립하는 계획
3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
4.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

- 안 제8조는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□ **성별영향평가법**

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11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,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, 상위 법령에도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는 바,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- 위원 수 : (현행) “15명 이내” → (개정) “20명 이내”

- 당연직 위원 : (현행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”

- (개정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을 포함한 경제·복지 등의 업무 담당 실·국장 중 5명 이내”

- 다만,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서는 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12조는 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(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)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- 안 제17조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,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일반 도민 및 공무원의 관심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,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,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확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내용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입법예고 및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- 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3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1월 21일
발 의 자 : 육미선, 박상돈, 박형용,
심기보, 이상욱, 최경천,
이상식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
 - (현행)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→ (개정) “성별영향평가”
- 나.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)
 -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의 정책 반영 관련 규정 등
- 다.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확대 구성 (안 제11조)
 - 위원 수 : (현행) “15명 이내” → (개정) “20명 이내”
 - 당연직 위원 : (현행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”
→ (개정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을 포함한 경제·복지 등의
업무 담당 실·국장 중 5명 이내”
- 라. 성별영향평가의 정책반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자 포상 조항 신설 (안 제1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-59호
- 라. 협 의 : 여성정책관
- 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 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 으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” 을 “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“분석평가” 라 한다)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5조 제목 “(분석평가 대상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 대상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 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 으로, “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호와 제3호” 를 “제2호부터 4호까지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도지사가 충청북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

제5조제1항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” 를 “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으로” 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분석평가의 고려사항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)” 으
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” 를
“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분석평
가결과” 를 “성별영향평가결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분석평가”
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)” 으
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
한다.

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로
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
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성
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통보
받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
하여야 하며,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
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, “성별영
향분석평가위원회” 를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
호 및 제2호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하며, 같은 항
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

제10조(중전의 제9조)제2항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분석평가결과” 를 “성별영향평가결과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분석평가결과” 를 “성별영향평가결과” 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제1항 중 “포함한 15명” 을 “포함한 20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이 되고” 를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을 포함하여 경제·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내로 하고” 로, “도지사” 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자” 를 각각 “사람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위원회의” 를 “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” 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제목 “(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” 를 “(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, “실장·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” 을 “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책임관” 을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분석평가의” 를 “성별영향평가의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분석평가결과” 를 “성별영향평가결과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0조” 를 “제11조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” 를 “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2조) 제목 “(분석평가 교육 등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 등 교육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4조(중전의 제13조) 제목 “(분석평가 자문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 자문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5조(중전의 제14조) 제목 “(분석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” 을 “(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분석평가” 를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포상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,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10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위원 구성

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를 “성별영향평가” 로 한다.

제13조 제목 “(성별영향분석평가)” 를 “(성별영향평가)” 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	정	안
<u>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</u>	<u>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</u>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성별영향분석평가법</u> 」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한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성별영향평가법</u> 」----- -- <u>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.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”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2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 <u>성별영향평가</u> ”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기본 이념)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(이하 “ <u>분석평가</u> “라 한다)는 실시되어야 한다.	제3조(기본 이념)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.		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<u>분석평가</u>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<u>분석평가 대상</u>) ① 도지사는 「<u>성별영향분석평가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<u>분석평가</u>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제9조에 따른 <u>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</u>에서 <u>분석평가</u>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</p> <p>② 삭제</p>	<p>제5조(<u>성별영향평가 대상</u>) ① ---- 「<u>성별영향평가법</u>」-----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. ----- 제2호부터 4호까지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도지사가 충청북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제10조에 따른 <u>성별영향평가위원회</u>에서 <u>평가</u> 대상으로----- -----.</p>
<p>제6조(<u>분석평가의 고려사항</u>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u>분석평가</u>를 하고 <u>분석평가서</u>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분석평가결과</u>에 따른 정책개선방안</p> <p>4. 그 밖에 <u>분석평가</u>의 기준에 관하</p>	<p>제6조(<u>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</u>) ---- ----- - <u>성별영향평가</u>를 하고 <u>성별영향평가서</u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성별영향평가결과</u>-----</p> <p>4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</p>

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	-----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<u>분석평가결과의 반영</u>) 도지사는 <u>분석평가</u>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<u>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</u>) 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제8조(<u>특정성별영향평가</u>) ① 도지사는 <u>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<u>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<u>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<u>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</u>) 도지사는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</p>	<p>제9조(<u>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</u>)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 -----</p>

<p>하여 매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안</p>
<p><u>제9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</u> 도지사는 <u>분석평가</u>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<u>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p>1. <u>분석평가</u>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분석평가</u>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</p> <p><신 설></p> <p>3. <u>분석평가결과</u>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</p> <p>4. <u>분석평가결과</u>의 공표에 관한 사항</p> <p>5. (생 략)</p>	<p><u>제10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</u> 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위원</u> <u>회</u>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</p> <p>2.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</p> <p>3. <u>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에</u> <u>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성별영향평가결과</u>----- -----</p> <p>5. <u>성별영향평가결과</u>-----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<p><u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</u>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<u>포함한 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이</u>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<u>도지사</u>가 위촉한다.</p>	<p><u>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</u> ----- ----- <u>포함한 20명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을</u> 포함하여 <u>경제·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내로 하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1. <u>성별영향분석평가</u> 관련 전문가</p> <p>2. 여성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<u>자</u></p> <p>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<u>자</u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고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</u>---</p> <p>1. <u>성별영향평가와</u>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2. ----- <u>사람</u></p> <p>3.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<u>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</u>) ①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<u>분석평가</u>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<u>분석평가</u>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·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<u>분석평가책임관</u>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분석평가책임관</u>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6조에 따른 <u>분석평가</u>의 실시 및 <u>분석평가서</u>의 작성에 관한 사항</p> <p>3. 제7조에 따른 <u>분석평가결과</u>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</p> <p>4.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5. 제12조에 따른 <u>분석평가</u> 교육에 관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<u>분석평가</u>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<u>분석평가</u>에 관한 사항</p>	<p>제12조(<u>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</u>) ①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 -----<u>공무원</u> 중에서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.</p> <p>② <u>성별영향평가책임관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성별영향평가결과</u>----- -----</p> <p>4. 제11조----- -----</p> <p>5. 제13조에 따른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</p> <p>6.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</p> <p>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<u>성별영향평가</u> 추진 관련 부서의 6</p>

	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분석평가 교육 등) 도지사는 <u>분석평가</u>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<u>분석평가</u>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<u>분석평가</u> 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	제13조(성별영향평가 등 교육) 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.
제13조(분석평가 자문) ① 도지사는 <u>분석평가</u>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. 1. <u>분석평가</u> 보고서 작성 지원 2. <u>분석평가</u> 관련 홍보 및 교육 3. (생략) ② (생략)	제14조(성별영향평가 자문) ① 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 -----. 1.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2.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분석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 ① 도지사는 <u>분석평가</u> 관련 정보의 수집·보급 등을 위하여 <u>분석평가</u> 와 관련된 정보 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는 <u>분석평가</u> 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<u>분석평가</u>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.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<u>분석평가</u> 관련 성별통계의 구축·생산 등을	제15조(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·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) ① - 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. ②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. ③ ----- <u>성별영향평가</u> ----- -----

<p>위하여 <u>분석평가</u>와 관련된 <u>성별통계</u>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삭 제</p>	<p><u>성별영향평가</u>----- -----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안</p>
<p><u>제15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16조</u>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
<p><u>제16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18조</u>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7조(포상)</u>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<u>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,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성별영향평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27.>

1. “성별영향평가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 3. 27.>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

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□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

제12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·국장(실·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·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)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14.>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14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)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14.>